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4. 20.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홍보전산과)
- 제출일자: 2023. 4. 7.(금)
- 회부일자: 2023. 4. 7.(금)
- 검토기간: 2023. 4. 7.(금) ~ 4. 13.(목)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월)에 의거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현재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 관련 사항 정비(안 제4조제2항)
- 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조)
- 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관련 사항 정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 제6조~제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행정규제 심사: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3. 2. 21. ~ 3. 13.) 결과: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으로 기능대체가 가능한 ‘정보화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웹접근성위원회 설치 및 정보화위원회 대행’ 등 관련사항을 삭제·정비하며,
-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2022. 10.)에 따라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 계획’을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에 대하여 ‘법인·단체’ 규정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정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7.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8.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2.10.11.>

제6조(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삭제 <2022.10.11.>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2022.10.11.>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 <2022.10.11.>

제9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2022.10.11.>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마련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을 포함한다)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신청, 해촉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2. 실행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및 지능정보화 정책 사업의 조정
3.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4.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 등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산업·환경·도시건설 등 소관 업무에 대한 각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 여부

-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 5.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 등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및 국가기관의 공공행정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에 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자

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빅데이터 활용

제16조(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에 대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빅데이터의 활용)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복지·관광·교육·산업·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빅데이터 실태조사)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20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지능정보화 행사를 실시·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2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함에 있어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1. 8. 11.)
2. “웹사이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화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

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웹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구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 7. 12., 2021. 8. 11.)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구·군,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2. 31.)